

2016.09.01

# 『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』 개정' 안내

## 1. 개정사유

- 개정사유
  - 대내외 건의 사항, 관세법 개정사항, 소송/행정심판 결과 등을 수용하여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**발급 요건을 명확**히 하는 한편 **발급 대상을 확대**하였습니다.

## 2. 주요 개정내용

- 기본 발급 대상 명확화
  - 세관장으로부터 보정통지를 받은 **보정대상 수입신고건 이외**의 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**자발적으로 수정 신고**하는 경우에도 **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**

### [보정안내 제도란?]

세관장이 수입신고 이후 6개월 이내(보정기간)에 해당 신고 건에 대한 오류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이를 치유하도록 하는 제도

2016.09.01

## 『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』 개정' 안내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

- 무역원활화 협정을 수용하여 관세법에 신설('14.12)된 사전심사(Advanced Ruling)에 대한 **재심사 제도 반영**

- 1)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및 변경에 따른 발급

관세청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

신고납부 하였으나, 관세청장이 기존의 결정을 변경한 경우 발급 가능

- 2)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및 변경에 따른 발급

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 받고,

동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,

관세청장이 기존의 결정을 변경한 경우 발급 가능

2016.09.01

## 『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』 개정' 안내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'발급제한'의 예외 대상 확대
    - **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단순 착오**로 인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
      - 1)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, 납세자에게 **'정당한 사유'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**으로 결정된 경우 발급 가능
      - 2) 수입 후, 착오로 **'재수출기간 도과 수출'** 또는 **'기한내 용도외 사용신청 누락'**으로 **감면된 관세를 징수**하는 경우 발급 가능
- \* 단, 허위서류 제출/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 예외 불인정

---

#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

---

2016. 8.

관 세 청

# 순 서

1. 제도개요 .....	1
2. 「기본발급」 · 「원칙적 발급 제한 대상」 .....	1
3. 「발급제한」 세부 운영지침 .....	3
4. 「발급제한 예외」 세부 운영지침 .....	5
5. 행정사항 .....	8
〈 참고 〉 개정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.....	11

## 1

## 제도개요

- (시행 근거) 부가가치세법(이하 '부가세법'이라 함)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('13.7.26.시행)
- (취지)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이후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성실신고 유도

## 2

## 「기본 발급」·「원칙적 발급제한」 대상

### 1 기본 발급대상

「관세법」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(부가세법 §35 ② 1 및 시행령 §72 ②)

가.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(관세법§28②)하는 경우 [(±)계산서 발행]

- ① 관세법(§33)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
- ② 수입물품의 운임, 보험료가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
- ③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,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수입신고이후 확정되는 경우
- ④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, 수입후 발생비용 등 공제금액이 수입신고이후 확정되는 경우
- ⑤ 수입물품 특별할인분 과세여부에 대한 과세가격사전심사(관세법 §37)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
- ⑥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(ACVA)에 대해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

나. 관세법상 **보정**(관세법 §38의2①·②, (+)계산서 발행), **수정**(관세법 §38의3①, (+)계산서 발행), **경정청구**(관세법 §38의3②, (-)계산서 발행)하는 경우

- **보정통지(안내)**를 받아 **보정신청**하는 경우 및 기업상담전문관(AM)의 정보제공에 따라 **수정신고**하는 경우도 발급 대상
- **세관장으로부터 보정통지(안내)**를 받고 **통지받은 보정대상 수입 신고건 이외의 건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**하는 경우도 발급 대상 <신 설>
- 사전세액심사기간(관세조사부서 조사포함) 중 **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보정신청**하는 경우 발급 대상

다. **후발적 경정청구**(관세법 §38의3③)의 경우 [(-)계산서 발행]

라. **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**에 따른 **경정**(관세법 §38의4①)의 경우 [(±)계산서 발행]

마. 관세를 **환급**(관세법 §46)하거나, **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**(관세법 §47)하는 경우 [(±)계산서 발행]

바. **계약상이 환급**(관세법 §106)의 경우 [(-)계산서 발행]

## ② 원칙적 발급제한 대상

가. **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**하거나,

나. **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**를 하는 경우

- ① 관세 조사,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
- 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
- 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

### 3 원칙적 발급제한의 예외

위 '2 원칙적 발급제한 대상'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발급 (부가세법 '§35 ② 2 가.~나.' 및 동법 시행령 '§72 ④ 1.~3.')

- 가.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관세협력 이사회나 「관세법」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
- 나.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
- 다.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「관세법」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·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
- 라.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된 경우
- 마.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

### 3 「발급제한(법 §35②2, 영 §72③)」 세부 운영지침

#### 1 세관장이 증액경정(관세법 §38의3④)하는 경우

- 수입자가 세관장의 보정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포함
-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§28④에 따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포함



② 관세 조사\*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통지 등을 받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

\* 관세조사는 심사부서에서 실시하는 ‘정기 법인심사’, ‘수시 기획심사’ 의미

○ 관세조사 통지시점은 「관세법」에 따른 ‘사전통지서’ 도달시점

— 관세조사 시작 전 통지에 따른 도달시점(관세법 §114)

○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‘관세범칙조사’의 경우, 관세조사 착수 후 수입자가 최초로 범칙조사 사실을 알게 된 때\*를 통지 시점으로 간주

\* 임의 현장방문, 압수수색 개시, 출석요구 경우 등 중 빠른 때

③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‘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’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

< ‘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에 착수’ 해당 예시 >

- ㉠ 납세심사부서에서 보정기간 경과 후 실시하는 ‘건별 세액심사’에 따라 수입자에게 ‘자료제출 요구’ 하는 경우
- ㉡ AEO기업에 대해 ‘종합심사’는 현장심사 개시하는 경우
- ㉢ 관세조사·범칙조사 의뢰(예: 사전세액심사건)에 따라 세액탈루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‘자료제출 요구’하는 경우

< ‘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에 착수’ 非해당 예시 >

- ㉠ 통관부서에서 수입신고 수리전에 ‘자료제출 요구’ 등을 하는 경우
- ㉡ 납세심사부서에서 납세자의 ‘보정·수정·경정청구’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‘자료제출 요구’ 등을 하는 경우
- ㉢ 납세심사부서에서 보정기간 경과 전 실시하는 ‘건별세액심사(보정심사)’를 위해 수입자에게 ‘자료제출 요구’하고, 수입자가 보정신청하는 경우

④ 위 '2'·'3'과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- 조사부서에서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'외환검사' 착수를 위해 사전검사통지를 한 경우
- FTA부서에서 실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'원산지조사(검증)' 착수를 위해 통지를 한 경우

**4 「발급제한 예외(법 §35②2, 영 §72④)」 세부 운영지침**

①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

- 가.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관세협력 이사회나 「관세법」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존 관세청장 등이 결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
- 나. 「관세법」 제86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 분류 결과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, 관세청장이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기존의 결정을 변경한 경우 <신 설>
- 다. 수입자가 관세를 신고할 때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증명 자료를 보관·비치하고, 품목분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품목분류를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증명하는 경우

< 증명자료의 보관·비치 판단 기준 예시 >

다음의 자료를 보관·비치하고, 과세당국이 요구할 경우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

- ㉠ 해당 물품 설명자료
- ㉡ 해당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설명자료
  -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과거 품목분류 사례
  -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품목분류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등

< 합리적 판단 기준 예시 >

- ㉠ 수집된 과거 품목분류 사례, 기준 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,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품목분류 사례, 기준이 누락되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
- ㉡ 수집된 품목분류 사례, 기준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품목 분류를 적용하였을 것

※ 단,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외

② 합병에 따른 **납세의무 승계**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(단순 납세자 정정에 한함)

③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 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·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

- 협정 및 법령에 따라,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,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

※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(허위의 원산지증명서 등)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경우 또는 다음의 수입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< '수입자 귀책사유' 예시 >

- 수입자가 협정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·발급 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
  -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
  -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\*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
- \* 형식적 요건: 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, 거래자, 발급권자, 서명, 인장, 기재요령 등

④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

가.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(Invoice, B/L 등)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

\* 단,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

나. 「관세법」 제97조(재수출면세) 및 제98조(재수출감면세)에 따라 수입시에는 기한내 재수출 의사를 갖고 신고하였으나, 수입자가 수입이후 착오로 ‘재수출기간 도과 수출’ 또는 ‘기한내 용도의 사용 신청 누락’하여 세관장이 면제·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<신 설>

\* 단, 부정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#### ㉔ 기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

가. 「관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 하였으나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재경정 하는 경우

나. 사전세액심사 사안\*에 대하여 수정·경정하는 경우

－ 세관장 등이 인정한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세청장의 재해석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

\* 해당 사전세액심사 사안이 아닌 타 사유로 추정하는 경우, 납세자의 허위 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경우에는 배제

다. 「관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고 동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관세청장이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하여 기존의 결정을 변경한 경우 <신 설>

라. 불복 및 소송 등\*의 결과, 납세자에게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, 발급 <신 설>

\* 「관세법」 제118조에 따른 ‘과세전적부심사’,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‘이의신청’, ‘심사청구’, ‘심판청구’, ‘행정소송’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‘심사청구’를 포함

마.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최초 경정처분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에 재경정(관세령§34⑤)하는 경우

바.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

※ 상기 ① ~ ⑤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

## 5 행정 사항

### □ 동 제도 시행 사항을 납세자 등에 적극 홍보

○ 특히, 관세조사 통지 이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

□ 세관장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납세자에게 통지한 관세조사·범칙조사, 보정심사 사안 등은 반드시 ‘전자통관시스템(징수)’에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·처리

#### ① 발급제한 대상업체 사전조치 요령

○ 조치부서 : 관세조사·범칙조사 등 발생부서(관리자 결재)

○ 등록처 : 전자통관시스템>>징수>>제세/세금계산서>>수정세금계산서발급제한업체등록

○ 등록대상 : 납세자에게 통지한 관세조사·범칙조사, 보정심사\* 내역

\* 보정기간 이후 납세자에게 건별심사를 위해 ‘자료제출요구’한 경우에 한정

○ 등록시점 : 관세조사통지일(도달기준) 또는 범칙조사 착수일\*에 등록

\* 범칙조사의 경우 관세포탈(부정환금, 부정감면 포함)사건에 한하며, 납세자가 인지하는 시점(압수수색 당일 등)에 등록

— 범칙사건 착수단서가 밀수, 지재권 등 위반 건인 경우 조사과정에서의 세액탈루 사실 확인시 등록

○ 등록내용 : 사업자등록번호, 등록사유, 수입기간, 수입신고서(전체 or 선택)

☞ 해당조사 종결 후(최종 세액정정 완료) 등록내역 삭제조치. 종합심사는 수정신고일 또는 관세조사 의뢰에 따른 관세조사 종결 후 등록 삭제

## ② 발급제한업체 수정신고時 등록부서의 최종확인 프로세스 준수

- 확인대상 : 발급제한 등록업체의 수정신고서(접수시 “미발급” 표시)
- 처리절차 :
  - ◆ [수입자]수정신고 ⇨ <접수> ⇨ [납세심사부서]요건심사 후 “미발급”수정 신고서에 대한 확인의뢰(시스템) ⇨ <등록부서 확인대상 ‘미결’ 생성> ⇨ [등록부서] 1차확인(부서원) → 결재(관리자) ⇨ [납세심사부서]수정신고서 최종결재·수리 ⇨ [수입자]납부 ⇨ [납세심사부서]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·미발급(시스템)
- ※ 제한등록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에 대한 수정신고서 처리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종전과 동일

## ③ 경정·추징 등록時 발급제한 요령

- 조치부서 : 관세조사·범칙조사 등 발생부서
- 조치내용 : 경정·추징 건별등록 시 납세자 귀책사유 등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“발급·미발급” 여부를 직접 선택
- ※ 경정·추징등록시 입력된 “발급·미발급” 상태의 변경은 “고지취소”절차로 가능하나 제척기간, 가산세와 연동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

□ 필요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제한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본부세관 ‘심사처분심의위원회’에서 심의·결정

- 기업심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등 위원회에 상정하여 귀책사유 여부 등에 대해 심의
- ※ 범칙조사·FTA원산지 검증·통관국 소관업무는 본청 해당 업무국에서 심의·판단

### < 심사처분심의위원회 >

(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0조)

-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 추징, 행정조치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본부세관에 설치·운영\*
- \* 본부세관별 월 1~2회 개최

○ 구성

- 위원장 : 본부세관 심사국장
- 위 원 : 6인 이내(심사·통관·조사·감사분야 전문가 그룹)

○ 심의사항

- 추징, 행정조치 등 심사결과 처분의 타당성 여부
- 품목분류협의회 등 상급 협의회 상정 여부
-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
-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의뢰 또는 관계기관 통보 여부
- 처분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, 처분위원회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
-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등에 관한 판단
- 심사처분 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

부가가치세법	부가가치세법 시행령
<p>제35조(수입세금계산서)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(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)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(이하 "수입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5.12.15.&gt;</p> <p>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(이하 "수정수입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관세법」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</li> <li>2.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</li> </ol>	<p>제72조(수입세금계산서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.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. &lt;개정 2016.2.17.&gt;</p> <p>② 세관장은 「관세법」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, 제38조의2제1항·제2항,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4제1항, 제46조,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「관세법」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 &lt;개정 2014.2.21.&gt;</p>



부가가치세법	부가가치세법 시행령
<p>하는 경우</p> <p>가.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관세협력이 사회나 「관세법」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</p> <p>나.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</p> <p>다.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13.7.26.]</p>	<p>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&lt;개정 2014.2.21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</li> <li>2.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</li> <li>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</li> </ol> <p>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"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&lt;개정 2014.2.21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삭제 &lt;2014.2.21.&gt;</li> <li>2.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「관세법」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·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</li> <li>3.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</p>
<b>부 칙</b>	
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</p>	

부가가치세법	부가가치세법 시행령
<p>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p>	<p>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,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.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</p>

#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· 제한 대상 신규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① 부가가치세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§35②1)</li> <li>○ WCO(세계관세기구)나 관세품목분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관세청장이 결정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(§35②2가)</li> <li>○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(§35②2나)</li> <li>○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, 수입자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§35②2다)</li> </ul>	<p>① 부가가치세법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%; height: 100%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text-align: center;"> <p>(현행과 같음)</p> </div>
<p>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</p> <p>&lt; 자발적 수정신고 등의 경우(§72②)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(관세법 §28②)</li> <li>○ 신고후 6개월이내 보정신고 (관세법 §38의2①·②)</li> <li>○ 자발적 수정신고 · 경정청구 (관세법 §38의3①~③)</li> <li>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(관세법 §38의4①)</li> <li>○ 과오납 환급(관세법 §46), 과다환급금 징수(관세법 §46),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(관세법 §106)</li> </ul>	<p>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</p> <p>&lt; 자발적 수정신고 등의 경우(§72②) &gt;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%; height: 100%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text-align: center;"> <p>(현행과 같음)</p> </div>

현 행	개 정
<p>&lt; <u>단순착오, 귀책사유 없는 경우(\$72④)</u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확인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·제출된 경우</li> <li>○ 기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의 경우</li> </ul>	<p>&lt; <u>단순착오, 귀책사유 없는 경우(\$72④)</u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
<p>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(관세청장 지침)</p> <p>&lt; <u>자발적 수정신고의 경우 등</u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정안내를 받고 보정기간 분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</li> <li>○ AM의 정보제공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</li> <li>○ <u>(신 설)</u></li> <li>○ 사전세액심사건에 대한 심사 중 세액을 결정·경정 전에 보정 신청하는 경우</li> </ul> <p>&lt; <u>단순착오의 경우</u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관제출 부속서류 기재내용과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서 잘못 작성</li> <li>○ <u>(신 설)</u></li> </ul> <p>※ 단, 허위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</p>	<p>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(관세청장 지침)</p> <p>&lt; <u>자발적 수정신고의 경우 등</u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<u>보정안내를 통보 받고(관세법 §38의2), 보정기간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</u></li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 <p>&lt; <u>단순착오의 경우</u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<u>수입後,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재수출면세 대상(관세법 §97)</u></li> <li>- <u>재수출감면세 대상(관세법 §98)</u>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단, 허위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</p>

현행	개정
<p>&lt; <u>귀책사유가 없는 경우</u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관장이 <u>부과고지</u>(우편물, 여행자 휴대품 등) 後, 재경정하는 경우</li> <li>○ <u>감면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○ <u>(신설)</u></li> <li>○ <u>(신설)</u></li> <li>○ <u>(신설)</u></li> <li>○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경정하는 경우, 기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</li> </ul> <p>※ 단, 허위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</p>	<p>&lt; <u>귀책사유가 없는 경우</u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<u>납세자가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(事前)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관세청장이 재심사하여 변경한 경우(관세법 §37③)</u></li> <li>○ <u>납세자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였으나, 나중에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재심사하여 변경한 경우(관세법 §86③, §87①)</u></li> <li>○ <u>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, 납세자에게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</u></li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 <p>※ 단, 허위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</p>